결 산 검 사　의 견 서

예천군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예천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0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 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금고 및 성인지 예산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일

예천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은 수　(인)

위　　원　권 택 장　(인)

위　　원　윤 상 무　(인)

위　　원　정 운 달　(인)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전 년 도	528,863,852	543,081,914	537,096,445	233,912	5,751,557
당해연도	557,112,517	572,936,927	566,785,791	962,504	5,188,632

○ 세입예산 개요

- 수납액 566,785,791천원은 예산현액의 101.7%로서 9,673,274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지난년도 이월 보조금, 공공기관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정산금, 공동부담 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금, 사업 보증금 반환금, 기타잡수입 등에 의한 것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 962,504천원은 납세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지방세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 처분 결과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인 5,188,632천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체납 비율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건축관련 이행 강제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88,863천원, 사용료수입 2,405,936천원, 수수료수입 2,035,205천원, 사업수익 1,045,972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513,226천원은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세입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였음.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

- 세입과목 적용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음.

○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 세입금의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한 결손처분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미수납금 이월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입결산 전반에 있어

- 세입 결산액은 금고 마감일 계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등 결산 관련서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정확성 및 세입과목 적정 편입 등 전반적으로 세입관리에 정확을 기하였음.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456,055,810	72,808,042	1,417,736	40,190
당해연도	481,913,000	75,199,517	0	104,691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405,112	528,863,852	433,197,319	75,199,517	20,467,016
36,451,185	557,112,517	440,932,108	98,765,857	17,414,552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481,913,00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5,199,517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57,112,517천원 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에 해당하는 440,932,108천원임

- **이월액**은 98,765,857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78건 82,815,84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4건 15,950,008천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에 사유가 있음.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되는 17,414,552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원인이 있음.

- **예비비 사용액**은 재난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없어 집행이 없었음

- **세출예산 전용**은 11건에 104,691천원으로 주민 대상 사업 진행 등을 위한 일부 전용이 시행됨.

- **이용•이체에 있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85건에 40,181,842천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과목별 지출내역을 검사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 기타과목별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 의견임.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본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중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순기의 불일치, 보조금 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지연, 보상 및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이월요인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충분한 사전협의 등으로 이월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수입대체 경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

○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특별한 사항 없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에 있어 검사결과 문제점 없음.

II.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전 년 도	43,108,297	42,636,987	42,369,184	0	267,803
당해년도	13,725,000	21,988,062	21,988,062	0	0

○ 세입 결산개요

- 수납액 21,988,062천원은 예산현액의 160.2%로서, 예산현액보다 739,113천원이 늘었으며 이는 보조금 교부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개의 회계가 줄었으며 이에 따라 징수액도 20,381,122천원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없으며, 작년 미수납액 267,803천원과 비교할 경우 징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세입 결산액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 년 도	38,413,000	4,695,297	0	0
당해년도	13,725,000	8,101,693	0	0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 용 액 (㉳=㉰-㉱-㉲)
0	43,108,297	29,984,249	8,101,693	5,022,355
0	21,826,693	15,336,906	2,957,160	3,532,627

○ 세출결산개요

-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725,000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 8,101,69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826,693천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 지출액은 15,336,906천원으로 예산현액 21,826,693천원의 70.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건 1,718,984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있었고 사고이월액은 2건 1,238,177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2%에 해당하는 3,532,627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잔액에 기인함.

○ 세출결산액은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 전용 · 이용 · 이체는 해당없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Ⅲ. 공기업특별회계

1.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당해년도	39,236,000	37,098,931	37,004,981	0	93,950

○ 세입결산개요

•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됨.

• 수납액 37,004,981천원은 예산현액의 94.3%로서, 현액보다 2,231천원이 줄었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5%인 93,950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상수도사용료에 체납액으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은

• 공기업특별회계 검사 결과는 금고출납계산서 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당해년도	39,236,000	0	0	0

이용·이체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 용 액 (㉳=㉰-㉱-㉲)
0	39,236,000	26,458,524	12,211,179	566,297

○ 세출결산개요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236,000천원이며, 신설에 따라 이월액 등 증감내역이 없이 예산현액이 39,236,000천원으로 동일하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 지출액은 26,458,524천원으로 예산현액 39,236,000천원의 6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12,061,419천원, 사고이월액은 1건 149,760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566,297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에 주요 원인임.

○ 세출결산액은

-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치수사업특별회계 반납액이 출납정리 기한 경과로 금고잔액과 불부합 되었음.

○ 전용 · 이용 · 이체는 해당없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IV. 재무제표 결산

1. 자산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전 년 도	2,359,555,706	128,585,033	4,708,472	171,131,165	363,860,251	1,690,218,757	1,052,028
당해연도	2,657,358,646	157,673,943	4,912,481	148,716,452	401,874,596	1,942,504,353	1,676,822

○ 자산의 개요

- 예천군 자산은 전년도 보다 297,802,940천원이 증가한 2,657,358,646천원으로 주로 사회기반시설 중 토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각종사업부지 취득과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주차장, 건물 등이 증가한 요인이며, 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마을쉼터 신축 등으로 증가하였음.

2. 부채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전 년 도	63,570,163	6,857,179	8,000,000	48,712,984
당해연도	59,980,059	7,682,597	7,200,000	45,097,462

○ 부채의 개요

- 예천군 부채는 전년도 보다 3,590,104천원이 감소한 59,980,059천원으로 이는 차입금과 리스부채의 상환에 의한 것임.

V. 성과보고서 결산

(단위:개, 천원)

구분	성과지표	성과달성			결 산 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9년 (A)	2018년 (B)	증감액 (A-B)
계	194	34	135	25	456,269,014	463,181,567	-6,912,553
의회사무과	2	1	1	0	583,682	1,086,633	-502,951
기획감사실	6	2	3	1	3,284,490	10,342,700	-7,058,210
주민복지실	23	3	19	1	88,944,937	73,776,712	15,168,224
행정지원실	12	3	8	1	56,061,019	57,646,468	-1,585,450
재무과	8	0	6	2	5,510,514	6,267,461	-756,947
새마을경제과	10	0	6	4	10,970,766	18,450,113	-7,479,347
종합민원과	11	0	11	0	2,293,373	1,868,973	424,400
문화관광과	7	0	7	0	17,544,991	30,956,263	-13,411,272
환경관리과	17	6	6	5	46,048,668	53,582,151	-7,533,483
농정과	17	1	15	1	41,151,531	37,793,127	3,358,404
산림축산과	16	0	16	0	16,181,907	14,132,336	2,049,571
건설교통과	13	1	8	4	73,045,125	44,676,434	28,368,690
도시과	9	0	7	2	19,989,306	30,074,533	19,989,306
건축과	4	1	3	0	4,649,623	14,799,538	-25,424,910
안전재난과	11	5	5	1	17,571,496	0	2,771,958
보건소	10	3	7	0	10,493,148	7,797,206	2,695,942
농업기술센터	6	2	4	0	6,677,401	5,897,671	779,730
체육사업소	8	6	0	2	9,904,535	26,006,073	-16,101,538
곤충연구소	4	0	3	1	4,406,912	5,522,364	-1,115,452
예천읍	0	0	0	0	2,906,603	2,809,767	96,835
용문면	0	0	0	0	1,586,211	1,844,153	-257,942
효자면	0	0	0	0	1,460,559	1,529,399	-68,840
은풍면	0	0	0	0	1,392,148	1,553,629	-161,481
감천면	0	0	0	0	1,700,797	1,928,651	-227,854
보문면	0	0	0	0	1,518,318	1,661,559	-143,241
호명면	0	0	0	0	2,102,647	2,049,937	52,710
유천면	0	0	0	0	1,650,963	1,909,019	-258,055
용궁면	0	0	0	0	1,648,316	1,744,605	-96,289
개포면	0	0	0	0	1,375,772	1,546,045	-170,273
지보면	0	0	0	0	1,805,394	1,942,056	-136,662
풍양면	0	0	0	0	1,807,865	1,985,993	-178,128

○ 성과보고서상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6,912,553천원이 감소한 456,269,014천원으로,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초과달성 34개, 달성 135개, 미달성 25개로 성과지표 194개 대비 169개 목표달성하여 87.1%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
이러한 달성요인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자율평가 제도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기인함.

Ⅵ. 기금 및 채권·채무·재산·물품의 결산

1. 기금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
합 계	1,872,942	912,392	2,176,997	2,785,336
자활기금	389,408	31	0	389,440
노인복지기금	339,150	5,277	0	344,427
식품진흥기금	106,184	1,837	13,570	108,021
재난관리기금	648,093	97,852	855,427	745,945
옥외광고정비기금	310,775	△199,885	750,000	110,89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69,309	70	0	69,38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023	4,601	558,000	14,624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1,002,609	0	1,002,609

○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785,336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912,394천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지출액은 2,176,997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2. 채권의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7,957,287	2,302,564	230,299	10,029,552
일반회계		6,282,850	1,390,476	30,032	7,643,294
특별회계		1,084,437	291,557	79,603	1,296,391
	의료급여기금	3,070	0	0	3,0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8,130	0	6,735	161,395
	새마을소득금고사업	563,237	288,057	72,868	778,426
	발전소주변지원사업	350,000	3,500	0	353,50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90,000	620,531	120,663	1,089,867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29,552천원으로 확인되었음

3. 채무의 결산

< 채무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 계	8,800,000	0	800,000	8,000,000
일 반 회 계	4,800,000	0	800,000	4,000,000
특 별 회 계 (농공지구조성사업)	4,000,000	0	0	4,000,000

○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800,000천원이 감소한 8,000,000천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음.

< 채무상환 예정액 >

(단위:천원)

구분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합계	8,800,000	8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3,600,000
일반회계	4,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특별회계	4,000,000		400,000	400,000	400,000	2,800,000

4. 공유재산의 결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합 계		1,239,405,956	122,819,725	6,864,079	1,355,361,602
행정재산	계	1,218,964,194	122,705,232	6,795,678	1,334,873,748
	공 용 재 산	96,094,133	61,182,694	1,376,107	155,900,719
	공 공 용 재 산	1,122,717,006	61,522,539	5,419,444	1,178,820,101
	보 존 재 산	153,005	0	127	152,929
일 반 재 산		20,441,762	114,492	68,401	20,487,853

○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5,955,646천원이 증가한 1,335,361,602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 토지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이며, 공작물은 도로, 하천, 배수로, 가로등, 광고용 간판, 교통표지판 등의 증가, 건물은 녹색문화상생벨트, 마을쉼터 등의 신축에 따른 것임.
감소 요인으로는 지목변경 및 합병말소, 면적·가격변경 등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된 부분임

5. 물품의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취득㉯)	처분(㉰)	
수량	676	87	44	719
금액	6,430,909	947,215	470,918	6,907,206

○ 물품은 전년도보다 476,297천원이 증가한 6,907,206천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공용차량 및 사무용 기재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임.

Ⅶ. 금 고 결 산

1. 세입 · 세출(2020.1.20. 기준)

(단위: 원)

회계별	구분	세 입 (㉮)	세 출 (㉯)	잔 액 (㉰=㉮-㉯) 계 (㉰=㉱+㉲)	공금잔액 (㉱)	예 치 금 (㉲)	비고
합 계		625,778,827,530	482,727,538,466	143,051,289,064	16,642,328,254	126,408,960,810	
일반회계		566,785,784,760	440,932,108,294	125,853,676,466	10,853,676,466	115,000,000,000	6,590원 부가가치세 과오납 오류
특별회계	계	21,988,061,770	15,336,905,700	6,651,156,070	5,788,651,788	862,504,282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14,056,569,140	11,116,395,020	2,940,174,120	2,940,174,120	0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933,279,201	877,404,400	55,874,801	55,874,801	0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397,292,702	0	397,292,702	31,338,420	365,954,282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775,954,580	250,000,000	525,954,580	229,404,580	296,550,000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56,745,226	436,278,740	20,466,486	20,466,486	0	
특별회계	치수사업	2,891,849,033	2,406,489,410	485,359,623	285,359,623	200,000,000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2,436,340,778	250,338,130	2,186.002,648	2,186.002,648	0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40,031,110	0	40,031,110	40,031,110	0	
공기업특별회계		37,004,981,000	26,458,524,472	10,546,456,528	0	10,546,456,528	

※ 2019.9.27.자 일반회계 세입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처리 오류로 인해 결산액보다 금고보관액이 그 오류 차액분인 6,590원 만큼 적음.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천원)

구 분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가 (㉯)	당해연도지출 (㉰)	당해연도말 잔액 (㉱=㉮+㉯-㉰)
합 계	738,620	11,251,422	11,176,275	813,767
보 증 금	41,425	75,577	41,052	75,949
보 관 금	606,087	11,063,180	11,039,616	629,651
잡종금등기타	91,108	112,665	95,607	108,167

Ⅷ. 성인지 예산결산

1. 총 괄 표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전년도예산현액	예산증감률
총 계	**47**	**23,402,452**	**11,907,982**	**96.53**
일반회계	46	22,601,386	10,918,982	106.99
특별회계	1	801,066	989,000	△19

2.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47**	**23,402,452**	**18,683,515**	**79.8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8	2,817,400	2,641,627	93.76
	일반회계	8	2,817,400	2,641,627	93.76
	기타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29	15,645,446	12,359,001	78.99
	일반회계	28	14,844,380	12,109,001	81.57
	기타특별회계	1	801,066	250,000	31.21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4,939,606	3,682,887	74.56
	일반회계	10	4,939,606	3,682,887	74.56
	기타특별회계	0	0	0	0

IX.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과다

○ 전액 불용처리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불용처리액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7,462	297,462
산림축산과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4,000	164,000
체육사업소	체육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50,000
환경관리과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	22,000
외 52건			183,505	183,505
계	56건		716,967	716,967

○ 지적사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외 55건 716,967천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함.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계획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 예산은 합리적 검토와 근거에 따라 정확한 예측 하에 편성되어야 하나, 사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분석 등 사업의 규모와 효용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할 경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또한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효율적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기금운용사업 집행실적 부진

○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설치년도	설치목적	2019년 예산	집행실적		
				2017	2018	2019
자활기금	2001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립지원	389,000	0	0	0
노인복지기금	2003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339,000	0	0	0

○ 지적사항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예천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과 2003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각각 389백만원, 339백만원임.
- 그러나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위 현황에서 보듯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그 원인으로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 많아 수혜자 발굴이 어렵다는 점과 자활기금 활용 후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해당부서에서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기금운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법적 사항을 검토해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강구해 불필요한 자금의 사장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3.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대한 대책 강구

○ 현황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다음연도이월액	징수율
2017	22,607,734	20,382,891	85,138	2,139,705	90.1
2018	28,250,182	25,484,122	230,182	2,535,878	90.2
2019	27,068,518	24,246,618	962,366	1,859,534	89.5

○ 지적사항

- 지방세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와 연결되어 중요한 사항이나, 징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음.
- 지방세 징수율이 줄어든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서 세수증가를 달성해야 할 것임. 특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의 과감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 및 공매추분을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것을 권고함.

4. 일반회계 이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

○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2017	490,717,119	399,160,357	**72,808,042**	18,748,720
2018	528,863,852	433,197,319	**75,199,517**	20,467,016
2019	557,112,516	440,932,108	**98,765,856**	17,414,552

○ 지적사항

- 위의 표에서 보듯 매년 이월사업비가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사유는 행정절차 등 사전 이행지연, 공기부족, 사업계획변경,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부서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정해뒀음.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내에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계	1,484	2,587	↑74%	4,566	↑76%
국비	1,206	1,675	↑38%	2,591	↑54%
도비	278	912	↑228%	1,975	↑116%

○ 지적사항

- 보조금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나 위의 현황을 보면 보조금반납금액이 2018년은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2,587백만원, 2019년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4,566백만원을 반납하였음.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 금액을 최소화해야할 것임.
- 사업자로 선정된 뒤 책임 없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후 사업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줘 집행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Ⅹ. 우수사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목표로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5만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여 많은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미래 100년의 초석 마련을 목표로 군민 화합과 신도시 상생발전 노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됨.

【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

ㅇ 사업내용
- 기　　간 : 2011.1.1. ~ 2019.12.31.
- 총사업비 : 92,316백만원
- 내　용
  - 풍양면 삼강주막 일원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권역 조성사업
  - 삼강문화단지–캠핑장–강문화전시관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막’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 개발

ㅇ 기대효과
- 예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삼강문화단지–캠핑장–강문화전시관을 잇는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 관광수요 창출

【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국보 승격】

ㅇ 내　　용 :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국보 328호 승격

ㅇ 관련사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식 시행
- 용문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국보 지정 기념활동 진행

○ 기대효과

예천군 최초의 국보문화재로서 뛰어난 문화재적 가치를 활용한 예천 관광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

○ 관련근거 :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 기대효과

- 농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업의 최저 안정망 확보
-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
- 농촌사회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예천군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경쟁력 확보